

제4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주주님의 건승과택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17조에 의거 제40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23년 3월 29일(수요일) 오전 11시 00분

2. 장 소 :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85 당사 본사 3층 강당

3. 회의목적사항

가. 보고사항 : (1)감사보고 (2)영업보고 (3)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

나. 의결사항

- 제1호 의안 : 제40기 (2022년 1월 1일 ~ 2022년 12월 31일)
재무제표(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)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
※ 이익배당 예정내용 : 1주당 현금 250원
- 제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 【별첨 1】
- 제3호 의안 : 사외이사 선임의 건 (후보자 : 오세정) 【별첨 2】
- 제4호 의안 :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(후보자 : 오세정) 【별첨 2】
- 제5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4. 의결권 행사방법

가. 본인 또는 대리인의 주주총회 참석

- 본인 참석 : 주총참석장, 신분증 지참
- 대리인 참석 : 주총참석장,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, 소유주식수 등 기재),
대리인의 신분증 지참

나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,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 할 수 있습니다.

5. 경영참고사항

상법 제542조의4의 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본사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,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6.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

우리회사는 「상법」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,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.

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,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.

가. 전자투표 · 전자위임장권유 관리시스템

인터넷 주소: 「<https://evote.ksd.or.kr>」

모바일 주소: 「<https://evote.ksd.or.kr/m>」

나. 전자투표 ·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: 2023년 3월 19일 9시 ~ 2023년 3월 28일 17시
(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)

다.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· 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

-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: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(K-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)


라. 수정동의안 처리: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

※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행사를 자제하거나 온라인 등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, 주주 여러분께서도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.

※ 이번 주주총회에는 기념품을 제공하지 않으니 이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.

2023년 3월 14일

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85

 대성홀딩스주식회사

대표이사 김 정 주 (직인생략)

별첨1

정관 변경(안)

■ 사업 목적 추가

개정 전	개정안	비고
제1장 총칙	제1장 총칙	
<p>제2조(목적)</p> <p>1) ~ 90) 생략</p> <p>91) 영화, 비디오 제작업 및 배급업</p> <p>92) ~ 171) 생략</p> <p>172) <u>전기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및 투자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 설)</p>	<p>제2조(목적)</p> <p>1) ~ 90) (좌동)</p> <p>91) 영화, 비디오물,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</p> <p>92 ~ 171) (좌동)</p> <p>172) 전시,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</p> <p>173) <u>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</u></p> <p>174) <u>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</u></p> <p>175) <u>사진장비 및 광학 기기 제조업</u></p> <p>176) <u>의료용 기기 제조업</u></p> <p>177) <u>측정, 시험, 항해,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</u></p> <p>178) <u>석탄 광업</u></p> <p>179) <u>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</u></p> <p>180) <u>철 광업</u></p> <p>181) <u>비철금속 광업</u></p> <p>182) <u>토사석 광업</u></p> <p>183) <u>기타 비금속광물 광업</u></p> <p>184) <u>광업 지원 서비스업</u></p> <p>185) <u>전기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및 투자</u></p>	사업목적 추가

■ 적대적 인수 또는 합병 방지 규정 마련

개정 전	개정안	비고
제 4 장 주주총회	제 4 장 주주총회	
<p>제27조(주주총회의 결의방법)</p> <p>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</p> <p>단, 정관의 변경, 회사의 합병 또는 해산과 이사 및 감사위원의 해임시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.</p>	<p>제27조(주주총회의 결의방법)</p> <p>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</p> <p>단, 정관의 변경, 회사의 합병 또는 해산과 이사 및 감사위원의 해임시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.</p>	

개정 전	개정안	비고
(신 설) 제 5 장 이사, 이사회 제40조(이사의 보수와 퇴직금) ① ~ ② (생략) (신 설)	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안건의 의결에 있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1. 적대적 인수 합병으로 인하여 기존 이사의 해임을 결의하는 경우 2. 적대적 인수 합병으로 인하여 신규 이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결의하는 경우 3. 본 항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정관의 개정을 결의하는 경우 제 5 장 이사, 이사회 제40조(이사의 보수와 퇴직금) ① ~ ② (생략) ③ 사외이사를 제외한 사내이사가 임기중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해임될 경우 제2항의 임원퇴직금지규정에 의한 퇴직금 외에 퇴직보상금으로 퇴직금의 이십배를 14일 이내에 지급한다.	적대적 인수 또는 합병 방지를 위한 이사 선임 및 해임 요건 강화 적대적 인수 또는 합병 방지를 위한 이사의 퇴직보상금 제도 신설

■ 중간배당 기준일 관련 규정 정비

개정 전	개정안	비고
제6장 계산 제44조의3(중간배당) ① 이 회사는 6월의 말일의 주주에게 상법 제 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결의로 하되,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.	제6장 계산 제44조의3(중간배당)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.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,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	중간배당시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설정하고, 이를 공고하도록 개정

■ 부칙

개정 전	개정안	비고
(신 설)	부칙(2023.03.29) ①(시행일) 본 정관은 202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	

별첨2

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에 관한 사항

가.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에 관한 사항

후보자성명	추천인	최대주주와의 관계	최근 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
오세정	이사회	해당없음	해당없음

나.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의 세부경력

후보자성명	주된직업	세부경력	
		기간	내용
오세정	대학교수	2019.02 ~ 2023.01	서울대학교 총장
		2018.03 ~ 현재	서울대학교 명예교수
		2016.05 ~ 2018.09	대한민국 국회(제20대) 국회의원
		2011.11 ~ 2014.02	기초과학연구원 원장

다.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·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·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

후보자성명	체납사실 여부	부실기업 경영진 여부	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
오세정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